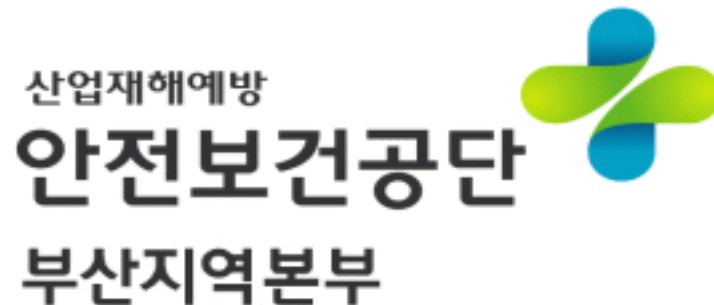




2015년 클린사업 공급업체 종사자 교육



교육 순서

-  1 '15년 클린사업 주요내용
-  2 공급업체 등록제도
-  3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제도

1. '15년도 클린사업 주요 내용

-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: **64%** 지급
- 건설업 클린사업 대상 확대 : 산재보험에 가입한 **공사금액 20억 미만** 현장
 ⇒ 10억 미만 건설현장 70%, 10억 이상 건설현장 50% 지원
-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
 : **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소작업대 등 보유 또는 임대업을** 행하는 사업장
 ⇒ 설비당 최대 2,000만원 지원, 방호장치 부착 소요비용의 70% 지원
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,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**각 1,000만원 추가지원**
- **적재대, 높낮이 조절 작업대 지원조건 제한**
 ⇒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**소요비용의 50%** 지원, 품목당 최대 1,000만원 지원
- **일부 품목 지원제외**
 ⇒ LED전광판, **높낮이조절작업대(500kg이상)**, 입식작업대, 식기세척기, 걸레물기제거기
 ❖ 15년 7월 1일부터 지원결정에서 제외
- 지게차 후방카메라 지원 추가
- 산재예방효과, 편중 지원 등을 고려한 **지원품목 재정비 작업 지속 실시**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➤ 공급업체 등록기준

○ 등록제 개념

- 클린사업 참여 사업주가 우량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(자가 · 임대 공장, 보유설비, 신용등급, 판매대리점, 전문공사 등)을 통해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우량 공급업체가 설비를 시공·납품토록 하는 제도

※ 단, 부적합 공급업체는 강력한 단속에 따른 참여 배제

○ 등록대상 : 클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업체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➤ 공급업체 사업구분

① 공사업체

- ☞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 보유 공급업체
 -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(전문)건설업 등록증
 - ②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
 -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
- ☞ 전문공사 미등록업체는 공사금액(부가세 제외한 건적가) 1,000만원 이상 건적 불가함

② 제작업체

- ☞ 클린사업 지원품목을 제작하는 공급업체
 - ※ 등록기준에 대한 서류확인을 통해 제작업체 등록(필요시 현장방문)

③ 판매업체

- ☞ 클린사업 지원품목 제작업체와 대리점 계약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공급업체
 - ※ 등록기준에 대한 서류확인을 통해 판매업체 등록(필요시 현장방문)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➤ 공급업체 등록요건

① 인력기준 : 3인 이상

- 클린사업 추진 시 영업관리, 적기납품, A/S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당 3인 이상 최소인원 배치(사업주 포함)

※ 근로자는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4대보험가입 증빙 자료 등)를 첨부

※ 공사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 확인

② 신용평가 등급 : B+ 이상

-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**B+ 이상**에 한해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(공공기관 제출용)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➤ 공급업체 시설 · 장비기준

① 공사업체

- ➡ 사무실 보유 또는 임대(단 여러업체가 공동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)
- ➡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
- ➡ 공사 관련 주요설비 목록 등

② 제작업체

- ➡ 제조공장보유 또는 임대(일부공정을 도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 제출)
- ➡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주요설비 목록 등
- ➡ 클린사업 보조지원품목 관련 카타로그 및 도면

③ 판매업체

- ➡ 사무실보유 또는 임대(단 여러업체가 공동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)
- ➡ 판매품목별 제작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서(대리점 계약은 3개사로 제한)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➤ 공급업체 교육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기본교육 의무이수
 - ※ 교육 미참석 공급업체는 교육이수 전까지는 공급업체 승인을 보류하고(미승인 처리)
이수 후승인 처리, 교육실시 후 신규로 등록하는 공급업체는 차기 교육 시까지 유예
기간 부여
- 교육방법
 - ❶ 시기 : 매년 초(필요 시 추가교육 실시)
 - ❷ 대상 : 공급업체 대표자 및 수행직원
 - ❸ 장소 : 지역본부 단위별 집합교육(필요시 본부 주관으로 별도 교육 실시)

2. 공급업체 등록제도

> 등록신청

- 접수처 : 공단 본부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지원팀
- 신청방법 : 공급업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- 제출서류 : 사본은 "원본대조필" 날인하여 제출
 - ※ 신용평가 갱신 시에는 "등록신청서" 및 신용평가 갱신 첨부서류만 제출

> 등록승인

- 공급업체 제출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등록 승인
 - ※ 사업 참여 공급업체 중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(필요시 현장조사)
- 일선기관에서 보고된 최종 현장실사 부분을 확인한 후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최종 승인하여 클린마켓에 공지
- 등록 승인 후 클린 콜센터, VOC 및 민원이 발생된 공급업체는 조사 실시

3.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제도

➤ 공급업체 모니터링 실시

- 등록된 공급업체의 성실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 및 처분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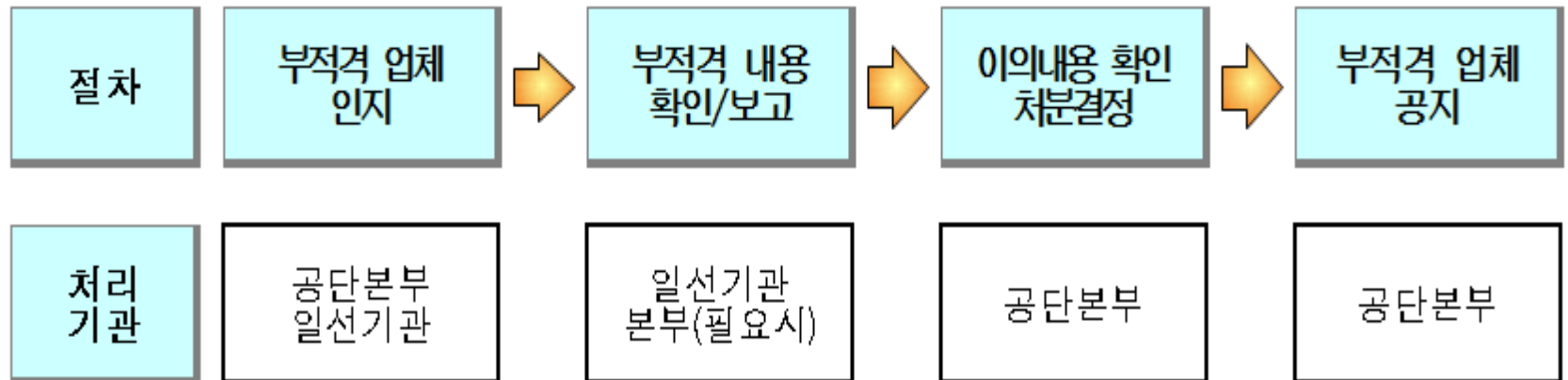
☞ 공급업체 모니터링 방법

- ① 공급업체 정기감독 및 불시점검 실시(필요시 일선기관 협조)
 - ② 공단 본부에 설치한 클린 콜센타에 의한 유선 설문조사(수시)
 - ③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내용(수시)
 - ④ 외부기관 조사 또는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(수시)
 - ⑤ 클린 모니터링 선발요원에 의한 현장조사 결과(수시)
 - ⑥ 기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된 내용(수시)
-

3.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제도

➤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절차

처리절차



3.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제도

➤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기준(참여배제)

부 적 격 내 용		처분기준
1.	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직원에게 금품·향응을 제공하거나, 접대명목·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비용을 요구한 경우	참여배제
2.	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토록 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(사업주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)하게 하여 주는 경우	"
3.	고의 또는 허위로 투자계획 및 보조지원 내용과 상이하게 설비를 시공·납품한 경우	"
4.	성능 및 품질이 떨어지는 특정 사양설비 또는 불필요한 설비의 투자를 강요·권유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	"
5.	사후 서비스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, 이를 지연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	"
6.	사업참여 사업장 사업주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누설하거나,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"
7.	타인의 전문공사등록증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빌려주어 설비 공사를 한 경우(양자 모두)	"
8.	사업장에 보조금의 편법 취득, 부가세 대납 또는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전제로 영업을 하는 등 부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	"
9.	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단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	"
10.	지원품목(공사) 가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	"
11.	보조지원품목 온라인 공개구매를 함에 있어 시설업체간 또는 사업장과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	"
12.	온라인 공개구매 결과, 납품(공사)업체로 선정된 후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제품납품 및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	"
13.	공급업체 및 제품등록 시 공급업체 정보, 제품정보 및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하거나, 허위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	"
14.	기타 허위 또는 부당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사업장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단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	"
15.	보조지원품목에 대한 변경신고 지연 또는 회피로 공단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	"
16.	공급업체간 민원제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(민원처리결과 당시 민원인 현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)	"

3.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제도

▶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기준(경고 및 주의)

17.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획과 일치하지 않게 시설개선을 지연시키거나 지원설비의 시공·납품을 취소한 경우	경 고
18. 안전조치 기준에 맞지 않은 설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	"
19. 자사 홍보물에 사업목적·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수록하고 노동부·공단·명칭(로고)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배포한 경우	"
20. 자사의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보조지원사업 내용을 오인토록 안내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	"
21. 기타 정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공급업체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단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	"
22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된 품목을 가로채기 위하여 사업장에 투자계획변경을 유도하는 경우	"
23. 보조지원품목에 대한 변경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또는 회피하는 경우	"
24. 공급업체의 등록요청 가격이 공단의 최종 심의 가격보다 30%이상 고가인 경우로서 시장교란의 의도성이 있는 경우	주 의
25. 기타 참여배제 및 경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단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	"

※「주의」공급업체의 2번째 주의 사안에 대해서는「경고」

※「경고」공급업체의 2번째 경고 사안에 대해서는「참여배제」

감사합니다